

■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8. 3. 8.>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지 급 대 상	지 급 등 급		지 급 액
	등급	지급인원	
·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임기제공무원 제외) · 별정직공무원 중 6급 상당 이하 ·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 · 전문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별표 1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1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8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8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